

제291회 임시회(3.3)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정 태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등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2013년 5월 2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201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움직임에 맞춰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7월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를 설립·운영한바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서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

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